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서상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3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2일

발 의 자: 서상열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길영, 김영철, 김용일,
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
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
옥재은, 윤기섭, 이경숙,
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
이새날, 이성배, 이숙자,
이종배, 이종태, 이희원,
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
최진혁, 황철규 의원(35
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한시적·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.
-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제공 및 향후 예산 확보 명분을 보강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 대한 조례상 지원 근거를 현행보다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조항 신설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,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
 2. 중도입국자녀의 사회·문화 적응 지원
 3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·교육 지원
- ②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지원의 내용 및 범위) ① (생략)</p> <p>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<u>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·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</u></p> <p>9. ~ 12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지원의 내용 및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8. ~ 11. (현행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7조의2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,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</u></p> <p>2. <u>중도입국자녀의 사회·문화 적응 지원</u></p> <p>3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</p>

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
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
용 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보육·교육 지원

②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
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
중복 지원할 수 없다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제7조의2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담당부서 확인결과 현재 기추진사업(붙임1, 붙임2, 붙임3, 붙임4 참고)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 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본 안 제7조의2제3호1)의 경우 현재 기추진 사업으로 50%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, 향후 사업을 확대하여 전액 지원 시에는 연평균 2,233,34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참고] 2024년 서울시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관련 예산

(단위: 천원)

관련 조항	사업명	예산액
제7조의2 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)	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	575,000
	중도입국 청소년 지원	755,448
	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 ²⁾	1,116,670

주 : 제7조의2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) 관련 예산은 총 2,447,118천원임
자료 : 2024년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추계 분석관 손제승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2) 외국인아동제원 어린이집 운영지원

[붙임1] 2024년 서울시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 예산 (본 개정안 제7조의2 관련)

□ 사업목적

-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·외국인주민 자녀에게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에 기여
- 자조모임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정서 안정, 역량강화, 자녀 교육 및 생활정착 증진 도모

□ 사업근거

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,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

□ 사업내용

-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
 - 사업대상 : 다문화가족 자녀(만 3세~15세) 약 1,250명
 - 지원내용 : 아동·청소년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방문지도
 - 추진방법 : 전문성 있는 법인(단체)를 대상으로 공모 및 사업 수행
-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사업
 - 사업대상 : 다문화가족 청소년(만 9세~24세) 및 학부모
 - 지원내용 : 다문화가족 맞춤형 진로지도 및 진학지원 종합서비스 제공
 - 진로지도 프로그램 : 1:1 진로컨설팅, 찾아가는 그룹진로상담(진로컨설팅), 다문화 진로 상담사 교육 등
 - 진학지원 프로그램 : 학부모 진학설명회, 1:1 진학상담, 입시전략 워크숍, 다문화 진학 상담사 교육, 입시자료집 발간 등
 - 추진방법 : 공모로 분야별 전문단체 선정 및 사업 수행
-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사업
 - 사업대상 : 다문화가족(결혼이민자, 자녀, 배우자) 및 선주민
 - 지원내용 :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(교육비, 다과비, 체험비 등) 지원, 활동사례 발표회 실시(연 1회) 및 모국어 교육 지원 문화예술활동, 자기역량강화, 자녀성장지원, 봉사활동, 학부모 모임, 모국어교육 등
 - 추진방법 : 자치구 공모 통해 구별 1~2개 자조모임 활동 지원

□ 향후 기대효과

- 다문화가족 자녀 학교생활 적응 및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에 기여, 다문화 사회통합 기반 마련

□ 산출근거

(단위: 천원)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
민간경상사업보조	○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	= 325,000
	-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1,250명*26,000원*10월	
	○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 지원	= 80,000
	- 진학지원프로그램 40,000,000*1개 단체 - 진로지도프로그램 40,000,000원*1개단체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	= 90,000
	-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모임별 3,000,000*30개	= 102,600
	○ 다문화가족 아동 외국어(영어) 교육지원 80,000,000원*1개단체	= 80,000

자료 : 2024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설명서 발취

[붙임2] 2024년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 (본 개정안 제7조의2 관련)

□ 사업목적

- 중도입국 청소년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, 전문상담,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 육성 지원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- 지원대상 :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, 그 가족
- 사업수행주체 : (재)스마트교육재단(대표자: 감경철)
- 추진방법 : 민간위탁(시설형)
- 사업내용
 - 한국어 수준별 교육, TOPIK반 운영 등 한국어 지원
 - 방과후 멘토링, 학교수업 보조지원, 검정고시 교육, 이중언어 특화교육 등 교육지원
 - 상담(심리, 진학),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(진로체험, 문화예술동아리 등) 등 맞춤지원
 - 한국사회 이해교육, 또래문화 이해, 언어별 커뮤니티 지원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중도입국 청소년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 지원 및 글로벌 시민으로 육성

□ 산출근거

(단위: 천원)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시설 임차료	= 205,000
	○ 인건비	= 256,230
민간위탁금	○ 운영비	= 102,600
	○ 사업비	= 191,618

자료 : 2024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설명서 발취

[붙임3] 2024년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(본 개정안 제7조의2 관련)

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

센터소개	사업소개	연혁	조직도	센터일정	공지사항	대관안내
------	-------------	----	-----	------	------	------



교육지원사업

- 한국어교실: 기초반~고급반, TOPIK 대비반, 찾아가는 수업
- 검정고시 대비반: 초·중·고졸 학력취득 검정고시 대비
- 방과후 학습 멘토링: 부진 교과목 학습지도, 외국어 교육



상담사업

- 다국어상담 서비스
- 진로탐색 프로그램: 진로탐색 특강, 직접 체험 및 현장 방문 등
- 가족관계형성 프로그램: 부모교육, 학부모 반상회, 가족관계 개선 캠프
- 청소년소통회의: 센터 이용 청소년 자조모임 형식의 회의 운영



문화교류사업

- 문화예술동아리: 음악, 미술, 댄스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
-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: 내외국인 청소년이 상호간의 또래 문화 이해 및 체험
- 문화체험 프로그램: 한국문화 체험 및 학생 단합 야외 프로그램
- 송년발표회

자료 : 서울외국인포털(<https://global.seoul.go.kr/>)

[붙임4] 2024년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(자체) 예산 (본 개정안 제7조의2 관련)

사업목적

- 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 육성 및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 지원

사업내용

- 외국인아동재원 어린이집 운영지원(시:구=5:5)
 - 재원 외국인 유아 보육료의 50%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

향후 기대효과

- 어린이집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 및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 부담 경감
-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 및 출산율 제고

산출근거

(단위: 천원)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외국인아동재원 어린이집 운영지원	= 1,116,670
	- 정부지원, 서울형어린이집	= 607,040
	140,000원*1,084명*8개월*0.5	
	- 정부미지원 어린이집	= 509,630
	▷ 3세	232,998
	241,700*241명*8개월*0.	
	▷ 4~5세	276,632
	231,300원*299명*8개월*0.5	

자료 : 2024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설명서 발췌